

2003. 3. 8

이(재) 521 부회의 ①  
심사 보고서 (작성)

# 條例案審查報告書

-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總務委員會

# 조례안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충주시주민자치센터 설치및운영조례개정 조례안	2003. 2.28	2. 28	3. 7	3. 7	자치센터 기획팀장
충주시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중개 정조례안	"	"	"	"	기획감사 과장
충주시공유재산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	"	"	"	회계과장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	"	"	도서관장

## 2. 제안설명요지

### 가.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 자치위원회 구성 개선 및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개정준칙에 의거 조례를 개정코자 함.

## 2) 주요골자

### ○ 주민자치센터 운영

-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로 함(안 제4조)
- 주민자치센터의 지역사회 진흥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의 우선적 수행(안 제5조)
-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분담, 주민자치센터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자문단 구성 등(안 제7조)
- 사용료, 수강료의 요율결정, 감면, 징수주체·관리·집행요령 등(안 제10조)
-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전관리대책(안 제11조)
-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를 정함(안 제13조)

###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에 일부 의결·집행기능 부여, 자치기능 수행 관련 토론험대 등(안 제15조, 제16조)
- 고문제도, 위원위촉 절차, 위원장 자격요건, 위원 주요 인적사항 공개 등(안 제17조)
- 위원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의무화(안 제18조)
- 위원 해촉요건 강화 및 해촉시 위원회 심의(안 제20조)

## 나.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지방재정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내실 있게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위원수 조정 : 9인이내 ⇒ 15인 이내(안 제2조)

## 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 대책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공포 [지방재정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788호 2002.11.29)]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과
-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율 인하(안 제22조)
  - 공공기관이나 사업용도 매각의 경우 : 연 5% ⇒ 연 4%
  - 분할납부기간이 10년 이내의 경우 : 연 8% ⇒ 연 6%
  - 분할납부기간이 5년 이내의 경우 : 연 8% ⇒ 연 6%
-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사용·수익한 경우에 전년도 대부료 보다 10%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적용하는 특례를 영리목적(농경지 제외) 사용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24조)
-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의 연체료 조정(안 제29조)
  -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연 12%
  -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 연 13%
  -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 연 14%
  -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연 15%
  -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60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청사신축 설계 기준면적 신설(안 제46조)
  - 행정자치부 공기 13330-506(02.8.12)로 지방청사 기준면적 조례 개정안 시달
- 2급관사 운영비 예산지출 범위 확대(안 제55조)
  - 2급관사가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변경됨에 따라 관리비 지출범위 확대
  - 응접셋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및 전화요금 지출

## 라.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시민들에게 도서관 이용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의 분관(호암도서관)운영에 따른 제명 및 도서관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제명개정
  -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사용조례 ⇒ 충주시립도서관사용조례
- 명칭변경
  -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 ⇒ 충주시립도서관
- 분관의 소재지 표시
  - 충주시 호암동 562번지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 계획은 1999년부터 국정개혁 100대 과제의 하나로 읍면동 기능 전환 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는 2002. 3. 18일 조례 제567호로 제정되었으며 금번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주민자치센터를 먼저 설치 운영해온 자치단체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각 민간단체에서 제시한 개선 요구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지난 2002. 3. 12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준칙에 의거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음.

-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동 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하여 일반 민간시설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당초 주민자치센터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였고 주민자치 기능 분야의 예시를 구체화하고 사경제 또는 개인영역과 관련성이 큰 분야는 가급적 제외하고 지역복지 기능을 추가하였음.
- 자치센터 운영 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중심의 자율적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자원봉사자 등 민간인이 자치센터 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고 자치센터 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주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또 자치센터의 운영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징수, 운영비에 활용토록 하는 등 자치센터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강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여 주민의 참여를 넓혀 놓았음.
- 위원회 구성도 하한선을 삭제하고 상한선만 3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계 각층의 전문가 및 각급 기관대표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한 계층이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균형성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시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동장과 시의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였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므로써 위원장의 계속 연임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안 제10조제3항 “별표1”의 수강료를 월 10,000원이하 내에서 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별표2”의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대상 및 감면율란에 전액감면 대상자는 명기되었으나 감면율에 따른 대상자를 명기하지 않았으며

- 제17조 제3항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40%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사항은 하한선이 40%로서 다른 계층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내용과 형평이 맞지 않아 논란이 될 수 있으며
- 같은조 제4항에 제1항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나 “감사 2인”의 선임 방법을 명기하지 않았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에 “감사는”을 삽입해야 하며 같은조 제5항 및 제4조1항, 제20조제1항1호중 “당해 동 관할구역 안에”는 동이 행정 주체가 아니라 “동사무소”가 행정 주체로서 “당해 동사무소 관할구역 안에”로 명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등 이외에 각 조문마다 자치센터운영 활성화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기능 강화에 맞도록 개정 되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나.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0조의3 제2항에 의거 2000. 11. 23 조례 제488호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을 9인 이내로 구성토록 개정하였으나
- 그동안 지방재정의 확대와 투자사업의 다양화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참여폭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지난 2001. 9. 15일자로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을 9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인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도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2. 11. 2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난 2003. 1. 7일 조례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2003. 1. 20일 입법예고 한 사항으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 청사신축시 각 자치단체의 편의대로 다양하게 신축하므로써 지방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음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에 따라 모든 지방 청사를 신축시 표준 설계와 면적을 정하여 일정한 기준 안에서 청사를 신축토록 하므로 예산절감은 물론 낭비를 억제하도록 하였으며 관사 운영비중 1급 관사는 일부 경비를 예산에서 부담토록 한 것을 지방자치화 시대에 맞도록 2급관사도 1급관사와 같이 적용하여 관사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에서 지출토록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

#### 라.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주 시민과 학생들에게 도서관 이용 기회를 확대하여 학문을 탐구하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충주청소년수련원내에 호암도서관을 설립 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 시립도서관 분관으로 청소년수련원내에 호암도서관을 설치 운영함에 따른 인력 충원 및 예산확보 등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답변 요지

### 가.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 ▶ 질의 : 자치센터 2003년 계획은?  
○답변 : 우선 동지역만 시행할 예정임.
- ▶ 질의 : 개정조례안은 시 자체 개정인가?  
○답변 :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해 개정하려는 것임.
- ▶ 질의 :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 위촉은 고문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뜻인가?  
○답변 : 본인 의사에 따라 고문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뜻임.
- ▶ 질의 : 프로그램 운영시 인접한 동을 묶어서 운영할 계획은?  
○답변 : 실정을 감안하여 편성 운영할 계획임.
- ▶ 질의 : 주민자치센터당 감사비 지원 내역은?  
○답변 : 센터(동)당 연간 1,050만원임.
- ▶ 질의 : 임원중 감사는 지명인지 호선인지 누락됨.  
○답변 : 호선이며 추가로 삼입하겠음.

### 나.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없 음.

### 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없 음.

### 라.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없 음.

## 5. 심사결과

- 가.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 수정의결
- 나.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라.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6. 붙임

- 가.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부
- 나.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라.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제4항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는”  
으로 한다.

###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7조(구성 등)①-③ (생략)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⑦ (생략)	제17조(구성 등)①-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장, 부위원장과 감사는 ..... ..... ..... ⑤-⑦ (현행과 같음)